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2개 이상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미만”을 각각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5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2.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제12조제1항 중 “7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2호의 위원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본문 중 “1명”을 각각 “1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명”을 “2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임원 각 1명”을 “임직원 각 1명 이내”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법제11조제1항제6호나목의 “영업현금흐름”이란 재무제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말하며, 다목의 “이자보상배율”이란 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4항제2호 중 “한국코스닥협회”를 “코스닥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한다.

-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제2항제16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의 지정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내용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기준일이 도래하는 회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예정 내용 통지를 발송한 회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		
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	-----			
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u>3개 이</u>	3. ----- <u>2개 이</u>			
<u>상에</u>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u>상에</u> 해당하는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가. -----			
총액이 120억원 <u>미만</u>	----- <u>이상</u>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나. -----			
총액이 70억원 <u>미만</u>	----- <u>이상</u>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다. -----			
이 100억원 <u>미만</u>	----- <u>이상</u>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	라. -----			
원(「근로기준법」 제2조	-----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			
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	-----			
명 <u>미만</u>	- <u>이상</u>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illegible]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2.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③ (생략)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 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 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u>7명</u>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후단 신설></u> ②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 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 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 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감 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	(「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 당하는 회사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 ----- ----- ----- <u>5명</u> ----- -----. 이 경우 <u>제2항제1호 및 2호의 위원 총수</u> <u>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u> <u>초과할 수 없다.</u> ② ----- ----- -----. ----- ----- ----- ----- ----- ----- ----- -----
--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며, 직전 사업연도 말에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다만,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기관투자자는 제외한다.

— — ●

1. --- 1명 이내

2. (현행과 같음)

- 3.
- 1명 이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며, 직전 사업연도 말에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기관투자자인 경우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2명. 다만,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 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주주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감사인선임위원회 개

[illegible]

가. ~ 다. (현행과 같음)

5. _____

최 통보일의 전날에 보유한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원 각 1명

③ ~ ⑧ (생략)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① 법 제11조제1항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비율(부채총액을

----- 임직원 각 1명
이내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① 법제11조제1항제6호나목의 “영업현금흐름”이란 재무제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말하며, 다목의 “이자보상배율”이란 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업종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
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
종(제조업은 제외한다)을 말
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의
1.5배를 넘는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
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
다)이 1 미만인 회사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산정
하는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다.

③ ~ ⑥ (생략)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는 서
류를 달리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삭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법 제10조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제2항제2호의 서류

④ · ⑤ (생략)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1명씩 추천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코스닥협회 회장

3. ~ 5. (생략)

⑤ · ⑥ (생략)

<신설>

⑦ · ⑧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 코스닥협회 -----
--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 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5. (생략)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 등”이라 한다)

가.·나. (생략)

<신설>

다. (생략)

17. ~ 22. (생략)

같음)

⑩ ----- 제9항까지-----

-----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5. (현행과 같음)

16.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라. (현행 다목과 같음)

17. ~ 22.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u>제49조(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③ ~ ⑧ (현행과 같음) <u>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	---